

러시아 平和維持活動에 대한 軍事史的 考察*

金 泰 雄**

1. 머 리 말
2. 평화유지활동의 태동
3. 러시아 주도 평화유지활동의 군사적 측면
4. 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
5. 맺 음 말

1. 머 리 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미·소간의 냉전은 이념적 갈등 및 대립과 함께, 미·소간의 치열한 핵무기 경쟁에 따른 핵전략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국제관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약 45년간

지속된 냉전의 패러다임도 1991년 구소련의 붕괴로 결국 새로운 국제질서에 밀려나게 되었으며, 그러한 변화는 국제관계에는 물론 국가간의 분쟁형태 및 그 본질의 변화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구소련 붕괴 이후 미·소간의 대립양상의 종결과 전통적인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해 국제분쟁은 이제 명백하게 지역적 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소위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에 의한 개혁·개방노선이 추구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루어진 그러한 국제구조의 본질적 변화는 걸프전에 이르러 동·서간의 군사적 환경이 완전히 변모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 주었다.¹⁾

오늘날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 가능성이나 그 형태는 점차 감소된 반면, 오히려 국지적 규모의 분쟁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그 발생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데, 대체로 군사전문가들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야기되는 새로운 지역분쟁들이 특정한 단일적 원인에 의해 발발되고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정치·경제적, 민족·종교적 분쟁형태로 나타나고 있다²⁾고 보고 있다.

그러한 지역적 분쟁 발생빈도의 증가로 인해 국제안보나 지역안보에는 '신냉전 체제의 도래'라 할 만큼, 과거의 전통적인 냉전체제에서 나타났던 수준이나 형태와 달리, 또 다른 갈등 형태나 대립 요소들에 의해 야기되는 우려적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다양한 지역분쟁들을 해결하고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킬 수 있는 노력과 조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평화유지활동이 국제기구나 국가간의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과거 냉전체제에서와 달리, 오늘날 국제적으로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협력관계에 있는 러시아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군사사적인

* 이 논문은 2007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 원광대학교 교수

1) Joseph S. Nye, J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Harvard University, 2000, pp. 240-241.

2) 이기택, 『국제 정치사』, 1997, pp. 658-660.

고찰을 통하여 그 양상과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오늘날의 러시아는 단일 국가로서의 기능보다는,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고 복잡화 되어가는 국제기구나 레짐의 테두리 안에서 국제안보 및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유지활동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비록 독립국가연합(CIS)의 일원으로서 15년 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현대 러시아의 평화유지활동은 분명히 러시아의 중요한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러시아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군사사적인 실상의 변화는 물론이고, 현대 국제사회의 안정 및 평화체제 유지 발전이라는 측면과, 나아가 국제 정치사의 연구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평화유지활동의 태동

(1)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추진 배경

유엔 헌장 제6장에는 분쟁들이 지속될 경우 평화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반 수단들이 열거³⁾되고 있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분쟁 해결 원칙으로 국제평화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분쟁과 위협상황의 예방 및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결 원칙은 이 분야에서의 유엔의 역할 문제를 논의한 1988년의 '마닐라 선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1989년 11월 15일 유엔 총회에서 이루어졌던 '국제 평화유지 해결 방안에 관한 결의'에서도 엿볼 수 있다.

3) 유엔 헌장 제6장에 명시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에는 협상(Negotiation), 조사(Inquiry), 중재(Mediation), 화해(Conciliation), 중재재판(Arbitration), 사법적 해결 등의 방법이 있다.

통상 내란으로 이행하는 분쟁과정에서 국제협약에 반하는 난폭한 사태로 인해 평화로운 시민들의 거주지나 도시들이 파괴됨으로써 반인간적인 수많은 중범죄가 야기되어 왔다. 유엔에 따르면, 최근까지 발발한 100여개 이상 되는 거대한 규모의 분쟁과정에서 2천만 명 이상의 사상자, 6백만 명 이상의 부상자, 그리고 1,700만 명의 난민과 2,000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할 만큼 그 피해가 막중한 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에 유엔의 평화적 역할이 합법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세계평화의 보존과 분쟁 요인의 제거를 위한 유엔의 책임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군사적 운용과 관련된 사항이건 아니건 간에 다양한 방안을 규정하는 유엔 헌장 제6장의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유엔 안보리와 회원국들 간에 필수 군사력 및 그 운용 수단의 안보리로의 위임에 관한 협약을 제안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꾸준히 준비되어왔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은 1950년 북한이 한국을 침략했던 사실에 관한 출판이 이루어진 러시아연방 창설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6·25전쟁 당시 미-소간의 냉전적 사고는 상대 조치에 대한 협조적 자세보다는, 사실상 비판적 자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⁴⁾ 당시 소련의 정책결정자들은 1950년에서 1953년 기간 중에 발생한 6·25전쟁 당시 유엔 안보리의 회의에 참석하기를 거부했던 '말리크(Jacob Malik)' 주유엔 소련 대사가 불참한 상태에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유엔군의 결성과 군사행동 시행을 결정했기 때문에 당시 미국을 위시한 국가들의 군사행동은 본질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소련 공군과 중공 인민지원군(人民志願軍)이 북한 측에 대해 군사 활동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 등 16개 유엔참전국의 한국

4) The Academy of Military Science of Russian Federation, *Russian Federation: The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pp. 326-327.

지원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무시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대해 그 당시 소련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내 일부 극소수의 비판적 시각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6·25전쟁은 유엔의 목적에 완전히 위배된 전쟁이었으며, 바로 이 때문에 6·25전쟁은 평화유지작전의 영향을 받는 전쟁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6·25전쟁은 급기야 냉전 과정에서 동서간 갈등과 대립의 극치상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대립의 결과는 미국과 그 우방국들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장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도록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미국을 위시한 그 우방 국가들은 유엔의 현장을 교묘히 피하면서, 유엔군을 안보리의 주도하에 편성하지 않고, 유엔 사무총장의 감독이나 서구 강대국들이 대다수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엔 총회의 감독 하에 편성하였다.”⁵⁾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유엔군의 배치 상황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유럽 국가들도 유엔 총회에서 더 이상 다수 석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평화유지작전과 평화를 위한 무력적 강제 활동도 유엔 사무부총장을 통한 유엔 결정에 따라 유엔의 안보리에서 비준된 유엔 연합군에 의해 분쟁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미국을 포함한 서구 유럽들 역시 필수불가결한 유엔군 편성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미국 및 서방 국가들에게 유리한 입지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엔 사무처와 유엔 사무총장의 관할로 유엔군 병력의 지휘권이 이전되기에 이른 것이다.

5) 6·25전쟁 당시 미국의 군사 전문가 R. Mackever는 “한국전쟁은 당시 국제상황에 부응하여 수행되지 않았다. 일련의 유리한 상황 조성으로 유엔군의 깃발이 유엔의 통제 하에 군사 활동을 수행하지도 않았던 원정군 사령관실 앞에 게양되었으며, 더욱 중요한 점은 중요한 결정들이 미국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하 왜곡되고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소련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1964년 7월 10일 국제평화 및 안전보장에 대한 유엔의 효율성 강화 대책들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이 각서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군대들 또한 서구 유럽국가들 및 군사 블록 미참가 국가들과 함께 유엔 구성군으로 편입하는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1964말, 체코와 불가리아가 “유엔 안보리의 관할로 자신의 군대를 소속 전환시키겠다”는 합의를 안보리와 체결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선언하게 되었다.

아울러 유엔 평화유지작전의 시행방법에 관한 주요 원칙을 보완하는 제33차 실무 소위원회에서 긍정적 조치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같은 조치들은 1973년 10월 중동전쟁의 새로운 발발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에 의한 중동 지역에서의 유엔군 창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유엔군과 그 기관의 범주 및 성격, 유엔군 운용에 따른 존속 기간과 기간 연장을 위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의결의 필요성, 지리적 배분의 합리적 원칙을 기초로 한 병력 수와 국가별 군대정원의 설정, 그리고 작전수행 과정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 안보리로의 작전지휘관 임명 제청 및 그 책임 부여와 같은 작전기구의 중요한 요소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의결되었다.

(2) 평화유지활동과 나토-러시아 관계

나토는 최근에 나토를 근간으로 하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한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법적 기초들은 유엔 헌장 제7장(지역적 협약)과 유엔의 본질적 원칙들에 대한 나토 동맹의 준수를 확인하는 ‘나토 협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헌장 제53조에서는 제반 지역 협약이나 강제 활동 기관에 대한 적절한 이용을 주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전권 위임 없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와 같은 제반 지역적 협약이나 지역기구들에 의해 그 어떤 강제 행동도 시행되어질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유엔이 존속하는 한, 1945년

에 채택된 유엔 헌장에 기초하여 유엔의 우선적 특권이 확고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초 러시아의 정치·군사지도자들은 슬라브 민족국가로서 나토 국가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유고에서의 장기 살육전과 관련된 분규적 사태와 그러한 전쟁 과정에서 유고의 붕괴를 지켜보면서, “유고 분규사태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나토군의 군사 활동은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 무엇보다도 나토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원칙에 결코 충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등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러시아 측은 나토의 회원국들이 나토 기구 내에서 군사적 행동으로부터 정치적 해결에 이르는 다양한 사태 해결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했던 점에 대해 “1992년 12월 월레회의에서 나타난 나토 군사 계획 위원회의 태도에 나토 내 모든 공식적인 책임자들이 동조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는 데,⁶⁾ 이러한 입장은 영국 외무장관 더글라스 허드(Douglas Herd)의 경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⁷⁾

러시아의 나토에 대한 반대 입장은 결과적으로 나토의 행동에 대해 일부 변화를 유도하였다. 나토는 1992년 7월부터 지중해에 상주하는 연합해군 예하의 전함들에 의해 세르비아 및 헤르체고비나에 대한 무역 봉쇄와 구 유고연방 공화국들에 대한 무기공급 봉쇄를 위한 아드리아해(Adrian Sea)

6) The Ministry of Defense of Russian Federation, *Krasnaya Zvezda*, Jan. 4, 1993.

7) David D. Caron, “The Legitimacy of the Collective Authority of the Security Council,”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7, No. 4, 1993, p. 448. 허드는 나토가 유고사태에서 보여주었던 유엔과의 협조 부족 현상을 우려하면서, “나토란, 국제 경찰의 성격을 갖지만, 물론 싸우고 있는 부대를 강제적으로 분리시키거나 외국 땅에 자신의 軍旗를 휘날리기 위해 투입하는 십자군도 아니다. 나토 참가국이 아닌 국가들에게 서구적 가치를 강요한다거나 다른 국가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그 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나토는 유엔은 물론이요, 유럽안보협력 회의 또는 유럽 공동체를 대신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유엔의 특별한 권위에 필적할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언급했던 것이다.

에서의 평화유지작전들을 개시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유고문제에 관한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해 협조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 영공 상에서의 비행금지조치도 같은 방식으로 통제하였다.

그로 인한 나토의 변화는 유고지역에서의 평화유지작전의 시행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나토는 서구 유럽과 이격되어 있는 유고지역에서 병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운용할 수 있는 교두보가 사전 확보되지 못한 작전지역상의 특징으로 인해 사실상 작전 시행 초기부터 군사행동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사라예보를 포위하고 있는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에 대한 최대한의 공중폭격을 가하는 것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러던 중 1994년 시라예보에서의 폭발사고가 유고의 상황을 매우 긴박하게 몰고 갔는데, 당시 사고로 민간인 68명이 사망하고 약 20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나토는 이미 1993년 8월 단계적인 장거리 공중포격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있었다. 이 무렵 ‘맨프레드 버너(Manfred Berner)’ 나토 사무총장도, 1993년 7월부터 유엔 안보리 결정 836호에 의거 나토 공군을 운용할 준비를 완료했고, 유엔 총회는 1993년 8월 12일 나토 군사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에서의 공중 폭격에 따른 작전적 방안들을 승인하기에 이르렀음을 발표했다.

그는 “1993년 6월 4일 유엔 안보리 제3,228차 회의에서 의결된 유엔 안보리 결정 제836호에는 ‘사라예보’ 지역에 대한 나토의 구체적인 공습계획 시행에 관한 그 어떤 전권위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사라예보 주변 지역에 대한 나토 공군의 폭격은 유엔 안보리의 특별한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나토는 나토의 이름으로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인들에게 1993년 8월 21일 밤 1시부터 10일 내에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화기를 ‘세르비아’ 시 20km 외곽으로 철수시키라는 최후통첩을 보내게 되었다.

나토 측의 최후통첩은 세르비아가 나토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 공중 포격

을 가하겠다는 위협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이러한 나토의 위협은 보스니아에서 공동체간의 분쟁에 대한 직접적 군사적 간섭의 실질적 가능성을 야기시켰다”고 크게 반발하고 나서기 시작하였다.⁸⁾

유엔 안보리의 결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런던·파리·뉴욕에서의 협의 후에 나토의 사실상 대표이자, 영국군 장군이었던 ‘마이클 로즈(Michael Rose)’ 보스니아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의 성명은 보스니아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었다. 그의 성명에는 세르비아측에 공중폭격을 가하는 사태로 발전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으며, 동시에 “나토의 공군력이 내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술적 차원에서 나토와 본인은 일심동체이다”라는 그의 의지가 강조되고 있었다.

한편, 이에 대해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나토 및 미국의 공식적 인사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인용하여 “본인은 공군 지원 결정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고 있기는 하지만, 공중 폭격에 대해서는 나토 위원회의 결정이 필수적이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결국, 그러한 상황은 유엔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행을 원활하게 촉진시키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특히 ‘갈리(B. Galli)’ 사무총장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던 ‘아므르 무아마드 무사(Amr Muhamad Musa)’ 이집트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러시아 정책 집행자들도 이 같은 나토의 군사적 조치에 대해 자신들의 ‘결정적이고 건설적인 입장’을 내세우면서, 나토의 조치에 대해 유고와 같은 슬라브 민족국가로서 고려할 수도 있었던 군사적 개입을 통한 분쟁 확대를 피하였던 러시아의 조치를 매우 이성적인 대외정책 수행으로 평가하고 있었다.⁹⁾

8) Sirenko V.F., *The Study of National Security Problems of Russian Federation: The Question and Method Krasnaya Zvezda of The Ministry of Defense of Russian Federation*, 1993. 2. 24.

9) The Ministry of Defense of Russian Federation, *Krasnaya Zvezda*, Nov. 24. 1993. 그 당시 러시아의 국내적 상황은 구소련 붕괴 직후 야기된 심각한 정치적·경제적·사회

평화유지군에 소속되어 있던 러시아 공수 대대의 ‘사라예보’ 부근의 ‘그라비짜’ 지역 평화유지작전에 대한 참가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위험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 작전에서 러시아 병사들은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세르비아인들과 회교인들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했던 것이다.

한편, ‘클린턴’ 미 대통령은 1994년 2월 22일 ‘사라예보’ 부근으로부터 포병부대를 피해 없이 철수시키려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한데 이어, 나토의 결단에 의해 유고에서 수행한 평화유지작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후, 나토는 ‘클린턴’ 미 대통령과 ‘갈리’ 유엔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어 세르비아인들에 대한 공중 폭격을 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부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결과가 발생됨으로써 러시아 국내에서의 나토와 미국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의식이 냉전시대 이후 전례 없이 증대되었다.¹⁰⁾

결국,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통해 우리는 타 분쟁과 마찬가지로 유고의 위기도 유엔헌장에 의해 강화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기초로 했을 때만이 극복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나토는 이른바 ‘나토의 신 군사전략’을 수립 완료한 상태이며,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을 연결해 주는 핵심적인 이익을 계속 수행해 나가겠다¹¹⁾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 세계 각 지역기구들에 의해 무력 분쟁을 조정하는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었는데, 예컨대 분쟁해결을 위한 특수중재위원회의 활동이 그 대

적 불안정 증대로 러시아는 유고사태에 대해 개입할만한 실질적인 여력을 구비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10) 당시 러시아 국영방송은 물론, 국내 일간지였던 *Commersant*, *Nezavisimaya Gazeta*, *Segodnya*, *Moscow Tribune* 등 거의 모든 주요 언론이 이러한 서방 자세에 대해 비난과 성토를 실시하였다.

11) Frederic L. Kirgis, Jr., “The Security Council’s First Year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9, No. 3(July 1995), p. 519.

표적인 實例가 되고 있다.¹²⁾

특히,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는 동·서(서구 및 공산지역)간의 관계 조정과 전 유럽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1970년대 초에 등장한 포럼형태의 '유럽안보협력회의(이하 '유럽회의'로 약함)'가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체제인 것으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1992~94년간에 유럽회의는 팔복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유고 사태, '몰다비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려는 '프리드네스트로브예' 사태, 그루지아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사태 등을 중재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었다. 그 결과, 1992년 3월 15일 개최된 '나토 협력 위원회' 회의에서 평화적 절차를 규정한 '나토-독립국가연합(CIS) 공동계획'이 승인되었고, 유럽회의의 최종 임무도 기안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구소련 영토에서의 '러시아의 기득권 확보'라는 러시아의 기본 입장이 분명히 반영된 가운데, 러시아는 유엔 헌장 제6장에 명시된 이념과 '나토-독립국가연합 공동계획'이라는 공동 합의에 의해 러시아가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와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나고르노-카라바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2월 25일 로마에서 유럽안보협력 회의가 재개된 가운데 야기된 그해 3월의 아르메니아군의 공격은 이러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유산시켜 버리는 사태를 야기하고 말았다. 그 결과 유럽회의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면서 비로소 이를 보장하기 위한 특수 평화유지군 설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이른바 '유럽 안보협력회의-나토-유럽 공동체-독립국가연합(CIS)'간을 연계하는 협력구조 설치와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에 의한 평화유지활동 수행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했다.¹³⁾

12) The Academy of Military Science of Russian Federation, *Russian Federation: The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Moscow, 1998, p. 332.

13) 이를 위해 1998년 6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러시아 등 5개국 이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를 창설할 목적으로 '타슈켄트 의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 및 불법 마약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협력

3. 러시아 주도 평화유지활동의 군사적 측면

(1) 분쟁과 비상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교리

지역적 전쟁과 군사적 분쟁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전쟁이나 분쟁을 예방 및 방지하고 국지화시키기 위한 조치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1994년 무렵, 지구상에는 70여개 이상 지역이 군사적 긴장상태에 직면해 있었다. 25개 국가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고, 24개 국가에서 군사적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었다. 앙골라, 소말리,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지역, 보스니아 및 헤르체고비나, 캄보디아 및 아이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등이 그 대표적인 곳이었다. 그리고 독립국가연합(CIS) 지역내의 '타지키스탄', '나고르노-카라바흐', '아브카지아' 등에서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의 연합 평화유지군이 평화유지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영토내의 '북오세티아'와 '잉구세티아'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활동이 진행된 바 있었다.

러시아의 군사전문가들은 평화유지를 위한 군사작전이 그 효율성 면에서 아직은 저조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데,¹⁴⁾ 그 이유를 첫째, 각 국가별로 상이한 능력과 환경 때문에 평화유지작전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접근 방법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무력을 제외한 다른 수단이 성공하지 못한 곳에서 무력 수단마저 결정적으로 사용되지 못하

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14) Academy of Military Science of Russian Federation, *Russian Federation: The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Moscow, 1996, pp. 334-335.

고, 우유부단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실무 담당자들이 내린 평가로서, 구 유고연방 지역 주둔 연합군사령관이었던 '잔 콤폴' 장군(프랑스)도 바로 그러한 점을 지적한 바 있었다.

결국 그러한 접근은 '합의위원회'나 '불간섭위원회'와 같은 다양한 위원회의 운영과 관찰단의 파견 조치 등에 의해 제한을 받았던 과거 국제연맹의 경험¹⁵⁾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였다. 그 당시 국제연맹의 소심한 업무 처리 방식은 침략자들을 오히려 고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주의할 만한 사실은, 평화유지활동에 따른 군사활동 수행과정에서 최신 자동소총과 포병, 유도화력체제, 장갑 장비, 다양한 기술 탄약 및 설비 등이 운용되었다는 사실이다. 분쟁 지역에서 공군력, 즉 전투 헬기와 항공기 등도 보다 자주 출현하였는데, 예컨대 '프리드네스트로브예' 지역 평화유지활동간 몰다비아 측은 일찍이 러시아에 의해 제공된 바 있었던 최신예 전투기 MIG-29기를 폭격에 운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연방 지역이나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우리만큼 치열한 고강도의 무력분쟁 사태로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 즉 이들 국가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포함한 최신예 군사장비가 얼마든지 충분히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러시아의 평화유지활동이 특정지역에서의 비상사태 조치들과 관련되어지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는 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에서 비상사태 조치란, 사회적·민족적 분쟁 해소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시행을 요구하는 배타적인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전역이나 각개 개별지역에서 도입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통치형태¹⁶⁾로 나

15) Joseph S. Nye, J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Harvard University, 2000, pp. 132-143. 이러한 대표적 사례로서는 1931년 9월에 발생한 만주사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국제연맹이 운영한 '리튼 조사 위원회'를 들 수 있음.

16) Academy of Military Science of Russian Federation, *Military Encyclopedia*, 1987, p. 811.

타나고 있다.

실제로 1988년부터 1993년 1월 1일까지 구소련 영토상에서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비상사태 조치가 26회 가량 실시된 바 있었다.¹⁷⁾ 러시아에서는 비상사태하의 법적인 체제유지의 임무를 내무부 예하의 연대 및 사단급 작전부대에 부여하고 있는 데, 이들 부대들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 중 북코카서스 지역에 편제병력의 83%, 편제전투장비의 90%, 그리고 편제수송장비의 83%를 투입했다. 그들은 전장 공포증·대중적 소요 및 반항 차단을 비롯하여 비상조치 하의 통행금지조치 등 각종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¹⁸⁾

러시아는 냉전시절에는 평화유지군 운용 문제에 관해 소극적 자세를 취해오다가, 구소련 붕괴 이후 국가 창설 초기에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같은 사활적 국가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 영토 내나 구소련 영토에 대해서는 소위 무력적 개입 성격을 갖는 내무군(내무부 예하 작전부대)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운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는 타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군의 파견과 운용이 경제·사회적 능력상의 부족으로 상당히 제한을 받는 입장인데, 그러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핵심적 이익지역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해 평화유지군을 운용할 때의 기본 원칙과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있다.¹⁹⁾

첫째, '합법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합법성의 원칙'이란, 평화유지군 구성요원들이 비상상황에서 법적 기준과 합법적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17) Dulimov E. I., *State Governing and Local Self-Government of Russian Federation*, 1995, p. 58. 그 경우는 아제르바이잔·키르기지아·타지키스탄 등에서 각 4회(총 12회), 아르메니아·그루지아·몰다비아·우즈베키스탄 등에서 각 3회(총 12회), 그리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각 1회(총 2회)씩이었다.

18) Ibid., pp. 58-62.

19) Osipov V. I., *Problems between Power and Governing of State in Regional Aspect*, Saratov, 1997, pp. 124-136.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둘째, '방지 및 예방적 활동 실시의 원칙'이다. 이는 분쟁적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분쟁의 확대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적시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셋째, '준비에 대한 치밀성의 원칙'이다. 어떠한 평화유지활동의 성공여부는 평화유지작전의 철저한 준비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명확한 협조의 원칙'이다. 평화유지작전간 협조의 명확성이란 지방 행정부나 법 수호기관 및 내무군(내무부 예하 작전부대)들과의 협조를 의미한다.

러시아 군사전문가들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기초로 분쟁 상황을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분했는데, 분쟁 발생을 위한 정치적·사회-경제적·군사적·심리적 전제 조건들이 점차 무르익어 가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분쟁 야기 단계, 위협 기간 중 지역 내에서의 긴장 첨예화 단계, 분쟁 활동의 초기 단계, 군사적 충돌 형태를 갖는 분쟁 발전의 위험 단계, 그리고 분쟁 상황의 국지전으로의 확산 허용 단계 등이 바로 그것이다.²⁰⁾

그리고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군사독트린에 대한 개정에 주목하고, 2003년 10월 새로이 제정된 신 군사독트린을 공포하여 평화유지작전을 시행하는 기능을 러시아에 부여함과 동시에,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²¹⁾의 국경, 그리고 러시아 영토 내에서 러시아 및 그 동맹국들의 중요 일상 이익을 위협하는 무력분쟁을 차단하는 기능도 러시아군에게 부여한다²²⁾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0) Zotova Z. M., *The Optimization of Mutual Relation between Federal and Local Governments*, Moscow, 1998, pp. 68-86.

21) '독립국가연합 집단안보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로서, 동 조약에 최초에는 구루지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몰다비아가 참여하기를 거부하였으나, 최근 들어 옵서버 참여 방식으로 그 기능과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22) The Ministry of Defense of Russian Federation, *New Military Doctrine of Russian*

이와 함께 러시아에서는 과거와 달리, 국내적 군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규 러시아군이 운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데, 신 군사독트린에서는 이러한 국내적 군사 위협근원을, 국내 상황의 불안정을 획책하는 민족주의자와 고립주의자 및 기타 단체의 위법적 활동, 헌법 제도의 강제적인 타도와 국가권력 기관 및 통치기관의 기능파괴 시도, 핵 에너지와 생·화학 공장 시설물에 대한 공격 및 불법적 무장단체 창설, 범죄 기구의 성장 및 병기고에 대한 공격 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²³⁾

(2) 러시아 평화유지작전에서의 군의 역할

러시아에 있어서는 분쟁이 무력적 적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책임이 군부대에 부여되어 있다. 특히, 거대한 폭도 단체들의 투쟁에 대한 군부대의 활동은 특징적이라 할 만큼 군부대 구성요원들의 특별한 전투준비와 부대 전술을 중시한다. 역사적으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과 '타지키스탄' 및 '아브카지아', 그리고 '프레드네스트로브예' 지역에서 러시아 평화유지군 부대와 법 수호기관의 운용경험 분석에 나타난 러시아의 평화유지군 부대 군사활동은 매우 특징적²⁴⁾이라 할 수 있다.

1989년 북코카서스 지역에서 러시아연방 내무군 작전부대의 임무를 수행했던 사단의 책임지역은 무려 3,925km²에 달했다. 그 책임지역 내에는 약 126개 경제시설(이중 78개가 통신시설에 해당)이 위치해 있었고, 약 14만 5천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위수지역 내에는 약 7만 5천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거대 도시가 위치해 있었고, 1만 명 내지 1만 5천 명의

Federation, Moscow, 2003, pp. 25-36.

23) Ibid., 2003, p. 28.

24) Zukov V. A., *The Power and State Governing of Recent Russian Federation*, Moscow, 1998, pp. 232-234.

인구를 가진 3개의 중·소 도시와 69개의 마을이 산재해 있었으며, 606km에 달하는 자동차로와 171km에 달하는 철로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작전 책임지역 내에는 40~200명 정도로 추산되는 10여개 폭도 집단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러시아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분쟁이 무력적 대립형태로 발전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책임을 평화유지군에 부여했는 데, 평화유지군의 폭도단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점을 요약하여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²⁵⁾

첫째, 평화유지군 부대는 분쟁지역으로의 성공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평화유지군 부대 지휘관의 입장에서 작전상황에 관한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 및 분석하고 비상사태 하의 법 체제 강구에 따른 필수 대책들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에 무엇보다도 지방 행정부와 법 수호기관 및 내무군 예하 임시 작전부대들과의 긴밀한 관계 수립·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필요시에는 헬기에 의한 지형순찰과 주민 거주지역 및 도로상의 이동 통제를 위해 특수수색정찰팀이 즉각 편성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폭도들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도들의 활동성격과 보유 장비 및 훈련정도에 따라 특수작전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술적 방법 중 하나인 수색은 포로들의 활동지역이 개략적으로만 나타날 뿐, 정확한 기지의 위치가 드러나지 않을 때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셋째, 무장 폭력단체 섬멸계획 수립 시에는 우군에게 가장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적 무장 폭력집단의 최우선적인 선정, 전투진지 구축, 정찰수색 활동수단·화력타격수단·공중습격(공중 기동)수단의 결정, 공수습격부대 및 차단부대의 결정, 화집점 설치수단·매복부대 및 엄호부대의 결정, 그리고 지휘통제 및 상호 협조체제와 전투근무지원 체제 준비 등이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25) The Ministry of Defense of Russian Federation, *The Military Doctrine*, 2003, pp. 34-3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 평화유지작전의 군사적인 특징들은 러시아연방의 군사·정치적 상황의 복잡성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평화유지활동 전략은 결국 상황의 안정과 무기 사용의 제한에 중점이 있다고 여겨지는 데, 요컨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분쟁 잠재지역과 긴장 근원지역에 대한 부단한 분석·예측과 위협정도에 따른 분쟁의 열거 및 분류, 지휘기관에 상응한 국제·지역·국내 평화유지군의 편성, 나아가 이러한 기관들의 권리와 의무의 엄격한 규정 및 법적 근거의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²⁶⁾

4. 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

(1) 1990년대 중반까지의 러시아 평화유지활동 기구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러시아에서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결정하는 일은 막대한 군사적 노력 투자가 요구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군에게 과도한 재정적 투자를 강요하는 사안이 되어 왔다. 더욱이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평화유지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재정적·물질적 수단을 할당해 주고 있는 유엔의 주도하에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통상 수행하고 있음에 반해, 러시아는 사실상 유엔의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많은 문제들을 처리하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 과중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러시아의 정치지도부는 러시아의 직접적인 정치·군사적 이익 분

26) The Academy of Military Science of Russian Federation, *Russian Federation: The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Moscow, 1996, p. 348.

야를 러시아의 최근거리지역에 위치한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에게 두고 있는 데, 이는 러시아의 안정과 발전이 이 지역의 안정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믿는 이들 정책결정자들의 전통적인 전략적 사고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러시아는 국가안정과 안보유지에 따른 핵심적 국가이익을 방호하기 위한 최적의 명분으로서, 헌법과 국방법, 그리고 군사독트린상의 주요 전문 및 기타 기본문서상에 “다양한 평화단체나 집단안보기구의 노력에 협조하기 위해 특수 평화유지군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논리와 함께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시행방법을 명시함으로써, 평화유지활동을 러시아의 주요 국가정책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활동과 평화유지작전 시행에 따른 제반 활동은 1990년대 중반까지도 합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법적인 지위마저 확고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말하자면, 러시아 대통령의 훈령과 국방장관의 지시만을 근거로 정규 군대에 소속된 부대들이 러시아와 인접한 많은 국내외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병력 수는 만 6천명 이상 규모로서 사실상 매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평화유지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정규군 요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 소지를 늘 안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방장관의 단순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유지군의 편성 및 보충과 운용에 관한 합법적 기반을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러시아가 평화유지활동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여 대가로서 유엔에 대해 재정적·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러시아 정책결정자들은 “러시아가 평화유지작전을 평화단체의 성실한 임무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외부의 일체 간섭 없이 자국의 핵심적 이익지역

에서 활동을 적극화하려는 의도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군 내부적 입장에서는 평화유지작전에 참가하는 부대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러시아 정부의 별도 책정 예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국방부의 자체 예산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러시아 국방부의 재정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군다나 독립국가연합(CIS) 지역내 국가들이 ‘타슈켄트 의정서’에 따라 상호 합의된 금액을 각출하여 역내 평화유지작전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유지활동 수행 입장에 따른 권리만 주장할 뿐 경제상황의 악화를 이유로 이미 독립국가연합 국가들 간에 합의한 의무에 대해서는 성실한 이행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러시아군의 평화유지작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이러한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제반 사태들은 이 지역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러한 분쟁들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국가연합의 집단 평화유지군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유지작전을 위해 기존의 재래식 정규군을 파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력운용의 효율성 강구 측면에서 평화유지작전을 사전에 특별히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활동 상황과 임무

러시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평화유지군의 총 병력 규모는 지상군 2개 사단(1만 5천명~1만 6천명)으로서, 러시아군이 참여하고 있는 평화유지작전 임무를 수행하는데 비교적 충분한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는 ‘유럽 재래식 전력 감축 협약’에 명시된 규모의 병력을 파견토록 요구하고 있는 ‘유럽 회의’ 결정에 근거한 것이다.

1994년 러시아내 ‘토츠코예’ 지역에서 미-러 연합 참모훈련(러시아 제27

보병사단과 미 제3보병사단에서 각각 250명의 병력이 참가) 형태로 실시되었던 '평화유지군-94'는 각급 평화유지군 부대에서 이루어져야 할 치밀한 전투 준비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었다. 이 훈련에 참가했던 러시아 전 장병들은 평화유지작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실무수행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이 훈련에 이어 미국에서 교대로 실시된 같은 종류의 연합훈련을 통해 러시아 평화유지군 부대 요원들은 戰役(Theater) 次元의 평화유지작전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²⁷⁾

그러나 독립국가연합(CIS) 및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유지작전은 초기에는 사실상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1993년 10월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간에 평화유지군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약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협약 조인국들은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지아·타지키스탄 등지의 모든 평화유지군 병력을 총 2만 5천명 규모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협약의 체결은 여타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의 동 협약으로의 참여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동 협약 체결로 인해 당시 평화유지작전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던 타지키스탄 지역에 러시아연방군 예하 증강된 1개 사단(제201보병사단)이 투입되어 현재까지 10여년 이상 운용되어 오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앞서 설명된 협약 이외에도, 북 코카사스 지역에 위치한 중요 통신시설을 방호하기 위해 그루지아·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등의 국가들과 또 다른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러시아 영토 내의 잉구세티아 및 북 오세티아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만 6천 5백 명을 주둔시킨 바 있었는데, 러시아군 단독으로 1994년 4월 타지키스탄과 그 주변 지역에서 러시아 국방장관 주도하에 특수 평화유지군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7) 당시 러시아연방은 미국 이외에 평화유지활동에서 일정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나라들, 예컨대 프랑스·영국 등과도 평화유지군 훈련교류협약을 맺는 것을 바랐지만 간주했다.

또한, 러시아 내의 다양한 무력기관 예하 부대들이 쌓아온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별로 충분치 못한 경험은 합법적인 기반을 구비한 평화유지활동의 시행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러시아 하원(두마)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합법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²⁸⁾

그동안 비상조치가 시행되었던 구소련 영토 및 러시아 내 지방정부 및 행정 관구에서 분쟁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병력 및 장비들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비상조치가 발현된 바 있었는데, 예컨대 1988년 2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지역에서 위수령, 동년 3월 '아담스크' 구역에서의 특별 비상조치, 1988년 2월 아르메니아의 수도 '에레반'에서 특별 비상조치, 1989년 8월 '아브카지아' 지역에서 시민 통행금지에 따른 특별 조치, 그리고 1992년 1월 북 코카사스 지역에서 비상사태 조치 등을 들 수 있겠다.²⁹⁾

그런데, 이러한 비상사태에 관한 조치는 러시아가 출범(1991년 12월) 하기 직전인 1991년 5월 '소비에트 러시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Republic of Socialistic Federation of Soviet Russia; RSFSR)' 시절에 제정되었다가, 러시아연방이 창설된 직후인 1992년 10월 '블라디카프카즈' 지역 및 '프리고로드니이' 지역에서의 상황 악화로 인해 '북 오세티아'와 '잉구세티아' 지역에서 비로소 공포 및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러시아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임무수행도 바로 이때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특히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 가운데, 그 당시 이들 지역에서의 민족·종교·영토적 분쟁 발발 가능성은 높은 위험 수준에 있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기에 들어서 미국·프랑스·독일·영국 등지에서

28) 이것이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와 창조 작전과 기타 형태의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러시아연방 군인 및 시민의 의무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이다.

29) Aberianov V.M., *The Function and Structure of State Governing of Russian Federation* Moscow, 1996, p. 248.

평화유지작전 참가 부대의 전투준비 태세에 대해 많은 관심이 경주된 가운데, 실제적인 평화유지활동을 고려하여 평화유지작전 시행에 관한 특별 법규들이 제정됨으로써 러시아에서도 그에 상응한 법규 제정 및 비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어떤 측면에서 러시아의 내정에 관한 일이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제관계에서 타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대외적 업무에 해당되는 일이기도 했다. 그리고 국제 분쟁이 어떠한 전투행동 형태를 띠게 되느냐에 따라 법 수호기관과는 별개로 러시아군 부대들을 분쟁 예방을 위해 적절히 투입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북 오세티아 및 잉구셰티아 지역에서의 비상사태'에 관한 러시아대통령 지시를 시행하기 위해 공수 특전부대의 투입과 함께 보병부대가 투입되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결국, 러시아 정부가 요구하는 영토적 통일성 유지와 국가 주권 수호 및 법질서 확립이라는 국가적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부대투입이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곧 비상사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군부대의 투입이 분쟁상황 발전에 따른 전투행동을 야기하는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했다.

(3) 집단 평화유지군 운영 관련 독립국가연합 국가간의 관계

독립국가연합 지역 내 현존 및 잠재적인 분쟁지역에서는 군사력을 운용하지 않고 이들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데, 바로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의 평화유지군 창설 문제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에서는 '독립국가연합 집단안보 조약'과 '타슈켄트 의정서'를 포함한 협약들을 기초로, 앞서 제시한 집단안보체제를 구성하는 무력 요소로서 독립국가연합의 집단 평화유지군 운용이 진지하게 검토되어 왔는데, 여기에는 이들 평화유지군의 구성 문제와 부대의 전투준비태세 완비 문제, 운용 방법, 그리고 법

적 기반 등 제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함³⁰⁾으로써, 평화유지군 부대를 구성 및 운용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보병대대를 평화유지작전에 가장 적합한 군부대 편성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편성과 지휘참모 구조면에서 제반 당면 임무의 특성에 따라 정규군 부대의 편제 구조와 구별되는 보병대대는 기동력과 임무수행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보강 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참모요원에 대한 보강 조치와 함께 정찰 및 통신 수단과 공병 및 전투근무지원 수단, 그리고 의무지원 수단의 보강이 필요한 입장이다. 한편, 부대 보충면에서 현재 독립국가연합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집단 평화유지군에게는 주요 전투 직위 및 중요 직무 수행자에 대해서는 계약제 복무 요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보충하고, 기타 잔여인원들에 대해서는 의무 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보충하는 혼합식 보충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군에서는 양질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해당 부대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한 부사관 및 병사 요원들을 선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데, 이렇게 선발된 요원들은 신체가 건강하면서도 건강해야 하며 병적인 징후가 없이 분쟁 지역의 기상 조건에 효과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함이 요구되고 있으며, 군기를 위반하는 경향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쉽게 흥분하여 다룰 수 있는 기질의 소유자들이 평화유지군 부대에 편성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화유지군 부대의 편성이 대체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부대편성을 통해 부대원들의 자질과 전투능력에 대한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함이 요구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편성

30) The Academy of General Staffs of Russian Federation, *Text Book about Peace-Keeping Operation of Russian Armed Forces*, Moscow, 1996, pp. 24-36.

31) The Academy of Military Science of Russian Federation, *The Military Thought of May 1996* p. 48.

된 집단 평화유지군의 상시운용은 독립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임무를 더욱 작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러시아군 내에는 최단 기간 내에 준비하여 즉각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할 수 있는 특수부대가 약 10개 사단(상시 전투준비태세 완비 부대)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으며, 점차 그 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러시아를 제외한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에 있어서 평화유지군 부대 편제요원들의 특수 전투준비태세 완비 문제는 아직까지 미결상태일 수밖에 없으며, 현재 러시아만이 평화유지군 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완비 여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러시아에서는 평화유지군 요원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완비를 위해 두 개의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데, 군사 관찰단을 교육하는 '쉴레츠노고르스크' 소재의 '비스트렐'과 평화유지군 요원에 대한 전투준비태세를 배비시켜주는 '볼가 군관구 예하의 교육센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내에서는 현재 이 두개의 교육센터에 의해 독립국가연합 내의 전투준비태세 완비 소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그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현재 평화유지군 부대의 전투준비태세 완비를 위한 지역별 교육센터의 창설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독립국가연합내 모든 국가들도 역내 평화 및 안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역내 안정 및 평화 강구와 관련하여 이들 국가들과 협력문제를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 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 러시아와 유엔의 상호관계

대체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분규 지역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바램으로, 총기 한번 사용함이 없이 '중립성을 갖는 군부대의 투입 및 상주'라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평화유지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는

노력을 경주한다. 그러나 평화유지작전 과정상의 다양한 주체들에게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태에 관한 설명과 평가는 현실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1994년 4월의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의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평화유지군 부대 요원들은 스스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개인 및 부대 방호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도덕적 역설 상황(Moral Paradox Situation)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러시아연방은 국제무대에서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러시아의 대외 정치적 활동 과정에서 러시아 평화유지군 요원들의 지위를 결정하는 매우 첨예한 문제에 직면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영토와 독립국가연합 지역 내에서의 평화유지작전이 국제법과 유엔의 원칙에 일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무부(국내소요 해결을 위한 내무군의 투입 통제)와 국방부간의 협약을 기초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러시아의 권리에 대해 의문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근본적으로 러시아는 미국과 서구유럽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토가 구소련 영토 내에서의 러시아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토의 동진'이라는 공세전략에 의해 독립국가연합 지역내 분쟁지역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예컨대, 이들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안보리 회원국들 가운데 일부 국가들이 1996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의 평화정착 방법 모색에 대한 실패 이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동 사태에 관련이 있는 타 중립국 평화유지군을 이 지역에 운용하고, 러시아 평화유지군 요원들은 더 원거리에 위치한 외국 분쟁지역에서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사실 자체를 러시아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특히 이러한 제안에 지지를 보낸 '갈리'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 후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러시아 하원에서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지위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놓고 청문회가 개최된 바 있었는데, 이 청문

회를 통해 러시아평화유지군의 권위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권위 강화를 위해서는 러시아 평화유지군에게 유엔군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종합되었다.³²⁾ 그리고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1996년 10월 개최된 독립국가연합(CIS)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통해 '독립국가연합 집단 안보조약'을 근거로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 집단 평화유지군을 결성 완료한데 이어, 유엔 안보 이사회의 의결과 유엔 헌장에 기초하여 편성된 독립국가연합 집단 평화유지군이 이 지역의 합법적인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부여받는 데도 성공하였다.

한편 이러한 러시아 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또 다른 대외 정치적 측면으로서,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의 집단 평화유지군의 일원 또는 단독으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운용되어질 수 있는 러시아의 신속 전개군 편성 및 배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다. 러시아 군사 지도부는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그러한 작전 여건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고도의 기동성을 갖춘 공수 특전사단들을 새로이 창설된 신속 전개군의 기본 편제부대로 편성 및 운용 조치함으로써, 러시아 영토로부터 현저히 이격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지·전략적 작전(Geo-Strategic Operation)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배비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 이러한 신속전개군은 러시아 내에서 심각한 분류지역으로 분류되어지고 있는 체첸 지역을 포함한 북 코카서스 지역에 일찍이 배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유럽 재래식 전력 감축 조약(CFE)'에 의해 이들 지역에서의 러시아 병력배치에 대해 사실상 그동안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다.³³⁾ 따라서 러시아는 '유럽 안보협력 회의'에 대해 국경지역에서의 전력배치 제한 조치, 특히 러시아 남부 국경지역 내 평화

유지군의 우선적인 배치를 제한하는 조치가 불공평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이 요구는 아직 서유럽 국가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군 예하 북 코카서스 군관구는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남부 국경지역에 대한 작전책임을 부여받아 왔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동 군관구가 맡고 있는 지역이 군사·정치적 상황의 불안정으로 인해 러시아 고유의 국가이익 방호 차원을 떠나, 역대 상황안정 차원에서 추가적인 전력배치가 요구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오고 있다.

한편, 러시아 군사 지도부는 정부 내의 7개 무력기관들이 각각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평화유지군과 그 대표단들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평화유지작전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성격을 띠고 있어, 무기사용과 함께 서로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양측간에 야기되는 '人的 障壁'에 종종 직면하게 되면서, 최근까지 약 100여명 이상의 러시아 평화유지군 요원들이 그 임무수행 과정에서 사망³⁴⁾한 것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러시아는 국가창설 초기의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1992년에 약 20억 루블, 1993년에 260억 루블 이상, 그리고 1994년도에 '아브카지아' 지역에만 무려 110억 루블을 지출하는 등 평화유지활동에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 왔다.³⁵⁾

그러나 러시아연방의 이와 같은 막대한 인적·물적 투자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서구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연방에 대한 시각이 호의적이지 않는 점에 대해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불만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엔과 유럽 안보협력 회의는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유엔 주도하에 러시아가 평화유지작전을 시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지는 못할

32) *Nezavisimaya Gazeta*, Moscow, 1996. 6. 18.

33) 구소련 시절에는 북 코카서스 군관구 및 레닌그라드 군관구 지역에 약 6,400여대의 전차와 11,800여대의 장갑 차량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1990년 10월 '유럽 재래식 전력 감축 조약'이 체결된 이후, 동 지역에 전차 700대, 장갑차량 80대 이상의 전력을 배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제한 조치를 받게 되었다.

34) The Ministry of Defense of Russian Federation, *Krasnaya Zvezda*, 2004. 8. 25.

35) Pozarov A. I., "Economics of National Security", *Military Thought* (No. 3), Moscow, 1998, p. 48. 한국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이 창설된 직후인 1992년도의 루블화의 환율은 5루블/달러, 1993년도는 10루블/달러, 그리고 1994년도에는 15루블/달러에 달하고 있었다.

망정, 오히려 냉전적 타성과 제국주의적 사고에 젖어 러시아를 비난하기에 급급하며, 특히 코카서스 지역과 타지키스탄에서의 러시아의 분쟁 중재 노력을 러시아가 마치 인접 국가들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비난하고 있다.”³⁶⁾

사실상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러시아가 그동안 수행해온 평화유지활동 과정에서 지대한 인적·물적 지출현상이 초래된 가운데, 그 정책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실패를 겪어 왔다. 러시아가 이러한 실패를 겪게 된 주요 원인으로 우리는 분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치 못한 예측과 그 결과 지역 상황 악화에 대한 러시아 정부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 지연 및 미비들을 들 수 있겠는데,³⁷⁾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원인에 의해 제반 분규사태가 제대로 통제되지도 못하고, 부대임무 수행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우리는 러시아가 그동안 수행해온 평화유지활동 경험에 관한 제반 자료 분석을 통해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 지역 내에서의 국가별·권역별 분쟁 예방 및 안보센터의 창설·운영을 주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분쟁상황 상시 예측’에 대한 필요성이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 언제든지 다양한 규모의 분쟁상황으로 충분히 발전되어질 수 있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군이 시행하고 있는 평화유지작전은 국제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 기실은 구소련 영토 내에서의 러시아의 기득권 확보를 통해 러시아의 국가이익을 확고하게 방호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³⁸⁾는 점을 깨닫게 된다.

36) The Ministry of Defense of Russian Federation, *Military Policy Report concerning Actual Tasks of Russian Armed Forces to be so* Moscow, 2003, p. 78.

37) Ibid., p. 78.

38)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비유하여, “러시아가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의 평화유지작

5. 맺 음 말

대체로 평화의 개념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Peace-Keeping)과 평화를 창출하는 것(Peace-Making), 평화를 성장시키는 것(Peace-Growing), 그리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Peace-Building)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³⁹⁾할 수 있는데, 흔히 평화유지군에 의해 수행되는 평화유지나 평화창출은 분쟁 장소에 유엔 주도하의 평화유지군을 투입하여 평화적 방법을 통해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유지활동 개념에 따라 다양한 위기적 상황에서 국가안보 및 국제안정 문제를 해결하면서 러시아가 그동안 시행해 온 평화유지활동 분석을 통해 나타난 교훈은 역대 긴장과 갈등의 최대 근원지로 평가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 및 평화 구축 대책을 강구해야 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실로 매우 크다 하겠는데, 결론에 대신하여 이러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러시아가 대내외적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평화유지활동 시행간 정규 군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러시아 군사독트린 내에 주요 전문에 반영하여 단호하고 과감한 정책적 조치를 강구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도 국가적 상황을 고려한 평화유지활동 성격에 대한 규명과 함께, 평화유지군 부대에 대한 대내외적인 운용 개념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러시아연방은 그동안 많은 평화유지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만을 거양해 왔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여 왔다는 점을 군사사적 함의로 제시할 수 있겠다. 이는 곧 평화유지할

전을 거부하는 것은 러시아 내의 평화가 파괴되는 것을 스스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고 표현한다.

39) 윤치영, 『유엔 정치론』, 법문사, 1998, p. 40.

동 목적 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총괄적인 교훈 도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유엔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평화유지활동을 정당하게 시행할 수 있는 평화유지군 부대의 법적 지위 마련과 함께, 집단 평화유지군 창설·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셋째, 이른바 '분쟁 예방 및 안정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잠재적으로 분규 발발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 위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 예측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창설된 '분쟁 예방 및 안정 센터'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보장하고,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인 공동 참여를 통한 '아태지역 분쟁 예방 센터'를 창설하여 역내 분쟁예방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분쟁예방센터가 수행하는 임무로서, 분쟁 상황에 대한 장·단기적 예측, 분규 발발 위험성이 높은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정치·사회·인종·영토적·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적시적 분석 및 규명과의 예방대책 강구, 분쟁과정으로 이행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의 가정 및 수립, 분쟁과 관련된 여론 분석, 그리고 평화유지활동 시행결과 분석 및 추론 등을 들 수 있겠다.

넷째, 평화유지활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준비된 평화유지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대 규모의 사회적 무질서 상황이 발생하여 정규 군대의 투입이 일단 결정되어지게 되면, 분규지역에서의 정규부대의 각개 장병들의 충분한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원칙이 확실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타 국가들의 국제적 경험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평화유지작전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문제점을 보완시킬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인류가 전개하는 평화유지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을 유발하는 객관적인 여건을 제거 또는 최소화시키는 한편, 국가들이나 국제

기구가 서로 공동으로 협력하여 반사회적이고 반인류적 행동을 제거 또는 어렵게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평화유지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분쟁 당사국들의 상호 불법적인 분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평화적 분리작업 수행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부가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규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조화시키고 협력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더 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원고투고일 : 2007. 2. 28, 심사완료일 : 2007. 3. 20)

주제어 : 독립국가연합(CIS), 평화유지활동, RSFSR, 평화구축, 분쟁예방 및 예측센터

<ABSTRACT>

A Study on the Military History of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leaded by Russia

Kim, Tae-woong

Generally, we could subdivided the conception of peace into 4 sets: Peace-keeping, Peace-making, Peace-growing, and Peace-building. According to this concept Peace-Making and Keeping missions of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Troops require such a measure that two sides (countries) come to an agreement through the peaceful method by the engagement of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In this point of view, we could draw following inferences from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the experience in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Armed Forces for more effective execution of the Peace Keeping Activity.

First, we have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Troops with searching for characteristics of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Troops in the consideration of Russian situation that in the new military doctrine in October 2003,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se reflected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of the Regular Armed Forces in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in the territories of CIS including Russian Federation.

Second, we have to prepare the legal status of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Forces for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Activities and establish principles of organization of Collective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Forces in the consideration of experience of failure in the Peace Keeping Activities

of Russian Feder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nd employ the 'Regional Center for Conflict Prevention and Pre-estimation of Conflict' in order to cope with the crisis situation in the consideration of Russian experiences.

Fourth, it is required for establishment of legal basis for the employment of regular armed forces as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Troops.

And Last, we have to construct the basis for the improvement and supplement of many problems during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through the study about the other countries' experiences.

Key Words : CIS,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RSFSR, Peace-building,
The Center for Conflict Prevention and Pre-estimation of Conflict